

후령

기안용지

문서번호: 법무 181.7

(전화번호 307)

전국규정
도록
전결사항

처리기관:

제1부시장

시장

시행일자:

16

6/1

보존년한:

보

기획관이관

11/1

후령자375

제2부시장

조

법무 담당관

○

기

법제과장

○

관



포

기획과장

기안책임자:

김 문 풍

73. 9. 21



경
유
수
신
용
장

후안참조

발
신

통
계

제
목

서울특별시부지가건물정비대책심의회구정 계정

(제1안) 내부결재

법률 제2581호 (73. 3. 5)로 주택개량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매에는 단순이 무도 가건물정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하여 오면 양지 부동건물 개량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게 됨에
따라 등사업의 합리적인 방안과 실시에 관한 관계과장들의 사건 심의기구
설치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무도 가건물의 철거 및 그 대체수입을 목적으로
한 부지가건물을 대체위원회의 기능을 보장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지

가 건 물 정 미 대 책 심 의 회 고 정 을 떠 악 과 갈 이 제 전 하 고 자 하 니 다.

(제 2 안)

수진 문화공보실장

발신: 법무 담당관

제목 시보 개재 의회

서 울 특 별 시무 거 가 건 물 정 미 대 책 심 의 회 구 정 을 발 치 공 포 안 과 갈 이
공 포 하 고 자 시보 개재를 의회하니 개재 조치하기 바랍니다.

첨부: 훈령 1. 부 끝.

(흔 령 안)

서울특별시 허가건물 정리대책심의회규정 제 호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리대책심의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73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정리대책심의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무허가건물의 합리적인 정리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리대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1)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2. 현금 보조 철거및 이주정착에 관한 사항
3. 철거민의 구호에 관한 사항
4. 주택개량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개량지구 및 정착지구 내의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의 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단속과장, 개량1과장, 개량2과장, 주택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행정과장, 관제과장, 농지과장, 구획정리1과장, 시설관리과장, 사회과장, 군수과장 및 시정개발담당관등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흥리하여 심의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소집과의사) (1)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지명된 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이 따른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전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명하고 일시, 장소, 안건등을 정하여 참석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1)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보고 결과 채택된 사항은 시작에 적극 반영하고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1)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개량1과 계획계장과, 개량2과 관리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시행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7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서울특별시~~법률~~ 제309호 (70. 9. 1) 서울특별시무역가건축물 대책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정이유

법률 제2581호 (73. 3. 5)로 "주택개량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래에는 단순히 무허가건물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오던 현지 불량건물 개량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전환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 사업의 합리적인 방안의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전 심의기구를 설치·현행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그 대책수립을 겸한 무허가건축물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 정리 대책 심의회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 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무허가건축물의 종합적인 정기대책을 심의하여 그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무허가건축물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

1. 무허가건축물의 집단철거계획이 관한 사항
2. 철거민의 정착 대책이 관한 사항
3. 철거민 구호에 관한 사항
4.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대책수립
5.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 계획이 관한 사항
6. 무허가건물 양성화 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주택관리관이 된다.

(2) 위원은 법무과장, 관제과장, 주택개량과장, 사회과장, 보건1과장, 관리제2과장, 은수제1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제4조(소집과심의)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조(건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6조(서무) (1)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단속 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개량과 직원중에서 시장이 명한다.

제7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71. 3. 12)

이 규정은 1971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9. 16)

이 규정은 1972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서 울 특 별 시

개량이 811- 94 (264)

73. 9. 5.

수신·법무 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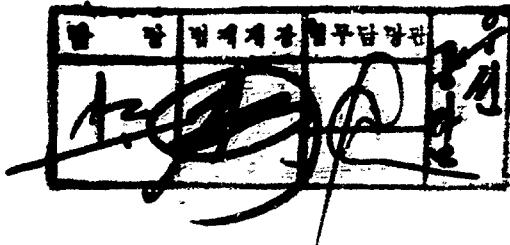
제목 자치법규 개정 외의

1. 1972. 9. 16자 훈령 제360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축물 대체위원회 규정을 험첨 개정안과 함께 개정조차 하오니 조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및 개정 이유

별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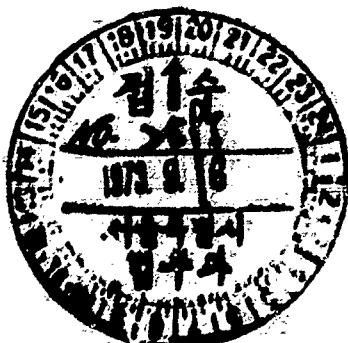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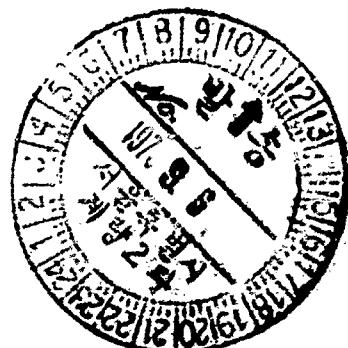
첨부 : 1. 개정안 3부.



2. 개정 이유서 3부.

3. 조문 대비표 3부.

4. 기타 참고자료 3부. 표.



개정 2 과

장

0670

제정사유

1. 73. 3. 5자로 주택개량 추진에 관한 당시 조치법에 계정 공포됨
에 따라 종래 무허가 건물 정비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오든 현
지 개량사업을 상기 조치법에 의거 완전히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
하게 되며, 등록법에 의하면 사업시행 방안과 절차가 도시계획
법, 건축법, 구획정비사업법 등을 준용도록 되어있어 구체적인 사
업시행과정 및 관계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난점이 예상되어
관련 실무과장들의 즉 늦은 의견 고려와 검토 조정이 필요함.
2. 현행 규정은 주택국 기구 계획으로 위원장, 위원 및 간사동 명칭이
상이하므로 개정이 불가피함.

제 정 안

0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 대책 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주택개량 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택 개량사업과 무허가 건물의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 정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조 (직무)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기존 무허가 건물 정비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2. 현금보조 청구 및 이주정책에 관한 사항。
3. 청거된 구호에 관한 사항。
4. 주택개량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
5. 재향지구 및 정착지역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투진상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7. 관계 법규 적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3조 (구성) (1)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된다.

(2)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관제과장, 단속과장, 개량 1과장, 개량 2과장, 주택건설과장, 법무담당관, 도시계획

국장, 도시행정국장, 관계국장, 농지국장, 구획정비

1국장, 시설관리국장, 사회국장, 군수국장, 시장기밀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위원장의 직무)
주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전에 하여금 출석하는 원을 지정한다.

(2)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소집과 심의)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의장은 위원(지정)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출석위원에게 통보한다.

제 6조
(전의)
(1) 위원회에서 승인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한다.
(2) 시장에게 건의하여 채택된 주요 사항은 시장에 적극 반영하고 따로 부여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제 7조
(사무)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한다.
(2) 간사는 계약 1과 계획기장, 계약 2과 관리기장이 되고 서기는 국현장을 이사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 8조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수 있다.
(시행세
적)

부 례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례 (71. 3. 12)

이 규정은 1971. 3. 12 부터 시행한다.

부 례 (72. 9. 16)

이 규정은 1972. 9. 16 부터 시행한다.

부 례 (73. 9.)

이 규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 툰 미 비 祖 潤 美 比

조항	전조문	개정안
국정 영향	서울특별시 부이가 건축물 대책위원회 규정	서울특별시 부이가 건물 정비 대책위원회 규정
제 1조 (목적)	부이가건축물의 불법적인 철거 대책을 실시하여 이 규정은 주택기장 축전에 관한 일체 조치 그 효율적인 정비방안을 시장에게 권의하기 위하여 놓여 의한 주택기장사업과 부이가 건물에 대한 이 서울특별시 부이가건축물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이적인 정비방안을 실시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이가 건물 정비 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 2조 (기준)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찰한다. ① 부이가건축물의 집단화 및 철거에 관한 사항; ② 철거민의 정부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철거민 주호에 관한 사항.	(7)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신의 조정한다. ① 기본부이가건물 정비의 기본 기준에 관한 사항; ② 현금 보조 철거 및 어주정부의 관 한 사항.

조 항 1 연 조 문	개 정 안
14. 불량건물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	3. 철거민 구호에 관한사항。
15. 기존 무허가건물 정비계획에 관한사항。	4. 주택개량 기본계획에 관한사항。
16. 무허가건물 양성화 일부에 관한사항。	5. 개량지구 및 정착마을 도시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17. 기타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분석 및 대책。
(1)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주택관리관이 된다.	(1)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된다.
(2) 위원은 법무과장, 관제과장, 주택개량과장, 사회과장, 보건 1과장, 관리제 2과장, 운수제 1과장, 시설과장이 된다.	(2) 위원은 주택행정과장, 관제과장, 단속과장, 개량 1과장, 개량 2과장, 주택건설과장, 법무담당관, 도시계획과장, 도시행정과장, 관제과장, 농지과장。
제 3조 (구성)	

조 항	한 조 문	개 정 안
		구획정리 1과장, 시설관리과장, 사회과장, 급수과장, 시정개발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직무 (신규)		<p>(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안건에 따라 출석 위원을 지명한다.</p> <p>(2)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제 4조 (소집과 절차)	<p>(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p>	<p>(1)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2) 회의는 위원(지명)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 다.</p> <p>(3) 위원장은 회의 개최 2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출석위원에게 통보한다.</p>

조	항	한	조	문	1 개	정	안
제 5조 (전의)		1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에게 건 의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시장 건의한다. (2) 시장에게 심의하여 채택된 주요 사항은 시장에 적극 반영하고 그 업무에 우선 하여 처리한다.		
제 6조 (서무)		1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단속 계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계장 과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한다.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계장 1과 직원 계장, 계장 2과 관리 계장이 되고 서기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 7조 (시행세칙)		1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 다.		

조항 1 번 조문		개정안
	이 규정은 1970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10. 10)
부칙	부칙 (71. 3. 12)	
	이 규정은 1971년 3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3년 9월 1일 부터
	부칙 (72. 9. 16)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72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住宅改良促進에 関한 臨時措置法 및 同施行令

서 울 特 別 市

0680

住宅改良促進에 関한 臨時措置法

(1973年 3月 5日)

法律第 2581号

第1條(目的) 이 法은 住宅改良을 促進하기 為하여 都市計劃法에
依한 再開発事業에 関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서 都市의 健全한 發
展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与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再開発区域의 指定) ①建設部長官은 第3條에 規定된 要件
에 該当하는 地区를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以下
道知事라 한다)의 申請에 依하여 住宅改良을 為한 再開発区域을
都市計劃으로 指定할 수 있다.

②建設部長官이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住宅改良에 関한 再開発区
域의 指定를 都市計劃으로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局務會議
의 啟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再開発区域의 指定는 住宅改良을 為하여
必要的 最少限의 面積안에서 都市機能을 回復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야 한다.

第3條(再開発区域 指定의 要件) 住宅改良을 為한 再開癈区域은
다음 각호의 1에 該当하는 地区에 대하여 이를 指定한다.

1. 이 法施行日現在 建築法, 其他 國家法令의 規定에 違反하
거나 그 基準에 未達한 建築物이 있는 地区

2. 住宅改良事業을 施行하기 為하여 撤去民을 強制하였거나 強容
하기 為한 地区

才 4 條 (再開発事業의 施行) ① 住宅改良을 為한 再開発事業의 施行에 關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諸外하고는 建築法 第 33 條의 2 및 同法 第 33 條의 3의 規定을 适用한다.

② 住宅改良을 為한 再開発事業施行者는 災害 또는 衛生上의 장애를 防止하거나 住宅改良을 為한 再開発事業에 依하여 造成된 住地 및 建築施設의 合理적인 利用을 困難하기 위하여 管理處分計劃에서 過少土地 또는 建築物에 대하여 分譲을 하지 아니할 것을 定할 수 있다.

才 5 條 (國公有地의 無償讓与) ① 才 2 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再開発区域안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土地中

1972年 12月 31日現在 無許可 建築物이 있거나 無許可 建築物의 廃去民을 取容한 地区안의 土地는 그 再開発区域의 指定에 關せ 都市計画의 決定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從前의 用途가 禁止된 것으로 보며 國有財產法, 地方財政法, 其他 國公有財產의 管理 및 处分에 關せ 国体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当該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贈与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購賣契約을 締結하여 代金의一部를 受領한 土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贈与된 土地中 公務員年金特別会計에 屬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当該年金 特別会計에 補償하여야 한다.

② 才 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道路, 鐵道, 其他 公共施設用地는 地方自治團體에 贈与되지 아니한다.

③住宅改良을 위하여 再開発事業의 施行으로 第 2 項의 施設에 閣음하는 施設이 設置된 때에는 從前의 施設用地는 当改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贈与된다.

第 6 條(再開発事業費의 造成充当 等) ①前條의 规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贈与된 土地의 使用収益 또는 起分으로 부터의 収入은 住宅改良을 为了 再開発事業目的 以外의 用途에 이을 使用할 수 없다.

②前條의 规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贈与된 土地의 管理处分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当該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한다.

第 7 條(事業施行에 对한 監督) 建設部長官은 다음 각号의 1에該当하는 境遇에는 住宅改良을 为了 再開発区域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事業의 變更 其他 必要한 措置를 그 事業施行者에게 命할 수 있다.

1. 再開発区域指定當時에 承認한 事業計劃에 依한 再開発事業을着手하지 아니하거나 建設部長官의 承認없이 變更施行한 때
2. 第 5 條의 规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에 贈与된 土地를 再開發事業目的 以外의 用途로 諸하여 起分하거나
3. 其他 公益을 为了 하여 必要하다고 頒定한 때

第 8 條(都市計画法의 準用) 住宅改良을 为了 再開発区域의 指定된 때에는 都市計画法 第 55 條의 规定을 準用하여 이 境遇 再開発区域는 都市開発予定区域으로 본다.

-4-

第9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하여 1981年12月31日까지 그 効力を 가진다.

1973년 5월 22일 공포

주택개량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주택개량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제개발구역의 지정신청) 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택개량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개발사업의 명칭·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과 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한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개발사업 계획의 개요서

2. 제개발구역내의 토지 소유자별조서

3. 경적도, 사본

② 건설부장관은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개량을 위한 제개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제개발사업의 명칭

2. 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개발사업 시행기간

4. 재개발사업의 개요

(3) 전설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법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의 관리청에 당해 토지의 자적도 사본을 첨부하여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을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무상, 양여된 토지의 등기이전 절차) ① 법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무상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재개발구역 지정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에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당해 관리청은 지체없이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축탁하여야 한다.

제 4 조 (연금특별회계에 대한 보상) 법제 5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의 토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 특별회계에 지급할 보상금의 금액과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에 보상금의 금액은 시가율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5조(양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당시 설계로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다음 각호에 제기한 시설용지를 말한다.

1. 도로

2. 철도

3. 광장

4. 궤도

5. 하천

6. 항만

7. 녹지

8. 풍원

9. 유원지

10. 시장

11. 수도

12. 하수도

13. 유통저장 및 충유시설

14. 지방문화체 및 그 보호구역

제6조(재개발구역 지정의 제소) ①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개발구역의 지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이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개인구역회, 지정에 취소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된 토지가 제3차례 양도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특별회계 재산인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양도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납입액, 납입시기, 양수한 제3차로 부터의 미납된 양도대금의 수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재산의 원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주택 개량 축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본법과 충돌)

- 도시계획법 제 55조

- 건축법 제 33조의 2

- 건축법 제 33조의 3

도시계획법 제 24조~제 28조

도시계획법 제 33조~제 53조

도시계획법 제 86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전부

지방세법 제 216조

지적법 제 10조~제 19조

지적법 제 28조~제 31조